

제주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41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결 2015. 4. 1.

판결 선고 2015. 4. 29.

제 1 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단524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14,987,161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임의경매 절차' 뒤에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밀감목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대상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밀감목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취지에서 위 밀감목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밀감목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와 일괄 매각되었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밀감목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욱, 판사 이승훈, 판사 고소영

별지

목 록

1. 서귀포시 H 대 492㎡
2. 위 지상 목조 스톤지붕 단층 단독주택 46.28㎡. 끝.